

## 「2020년 군산·예술 콘텐츠 활성화 특화사업」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재공고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는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 군산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콘텐츠/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여 창업자 육성을 통한 지역 콘텐츠 경쟁력 및 브랜드 강화

###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사업화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의 로컬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로컬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도내 소재 기업 및 (예비)창업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내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업</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점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부담</li><li>- 신규고용</li><li>- 군산 내 사업장 보유 및 거주자</li></ul></li></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군산의 유·무형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 로컬 콘텐츠 개발 사업화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콘텐츠 개발 및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예산(콘텐츠 개발, 마케팅, 지식재산권 취득, 인건비 등)</li></ul></li></ul>	

#### \* 로컬 콘텐츠 사업 정의 및 요건

- 정의: 지역별 유무형의 자원 또는 생활문화를 활용하여 기존 사업활동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지역 1차 생산물을 원재료로 또는 이를 활용하는 콘텐츠
  - ② 지역 문화, 6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특성을 이용하는 콘텐츠
  - ③ 지역 전통자원 또는 전통상품을 원재료로 또는 이를 활용하는 콘텐츠
  - ④ 지역의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생활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 ⑤ 지역소상공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 ⑥ 지역 생활환경 개선 또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 ⑦ 상기 사항에 준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콘텐츠

(공통)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콘텐츠산업 분류 중 기획·제작 분야 및 융복합 콘텐츠(디지털 기반 및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 순수예술 단독지원 불가

- 음악 콘텐츠의 경우 뮤지컬, 대중음악, 타 장르·기술 혼합 음악공연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콘텐츠산업 분류(11개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캐릭터산업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광고산업	광고제작업	영상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브랜드컨설팅
만화산업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CP)
애니메이션 산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창작 제작업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애니메이션 제작업
게임산업	게임 제작업	게임 제작업
음악산업	음악 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방송산업	방송영상물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화산업	영화 제작, 지원 및 유통업	영화 기획 및 제작
출판산업	출판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지식정보 산업	e-learning업	e-learning 기획업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콘텐츠 솔루션 산업	콘텐츠 솔루션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기획 및 제작업(VR·AR)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 제작지원과 별개로 주관기관(과제 신청 기업)은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추진경과 보고 의무가 있으며, 결과물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주관기관(과제 신청 기업)에게 있음

○ 협약기간(과제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1. 2. 25.까지

○ 지원규모 : 2개 과제 내외

분야	지원과제 수	최대지원금
사업화 지원	2개 과제 내외	과제당 40,000천원

## 사업 절차 ■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서면·대면)	예산심의 및 조정	협약 체결
2020. 10.	2020. 10.	2020. 10	2020. 10.
접수서류 자격검증	※지원규모 배수 초과 시 서면·대면 평가 진행	선정평가 통과 과제 대상 평가 진행	수행계획조율 및 협약 1차 교부금 지급
과제수행	중간평가	결과평가	정산 및 실적보고
협약체결일~2021. 02.	2020. 12.	2021. 02.	2021. 03.
과제 관리교육 및 과제수행 및 월별보고	과제수행현황 점검 2차 교부금 지급	과제 결과평가	과제별 정산실적 보고 및 사업종료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조건 ■

구분	조건 사항	공통
기업 (법인/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산업 분야 기획 및 제작 분야 도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함</li> </ul> </li> <li>◦ 도외 기업이 지원할 시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으로 본사 이전을 해야 하며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에 대한 확약 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후 2개월 이내 전북 이전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환수 또는 제재조치</li> </ul> </li> <li>◦ 지사 기업의 경우 전라북도에 지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사 설립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최소 3명 이상 도내 근무, 거주증빙 필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군산 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사업의 타 제작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li> </ul> </li> <li>◦ 자기부담금(지원금의 10% 이상) 매칭 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부담금은 예산심의에 의해 지원규모가 변경되어도 신청 금액 동일하게 부담</li> </ul> </li> </ul>
예비 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전국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9세 이상 콘텐츠 관련 예비창업자</li> </ul> </li> <li>◦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산 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li> </ul> </li> </ul>	

## 신청 유의사항 ■

### ○ 신청자격

- 전라북도 도내 기업으로 콘텐츠 기획·제작 가능한 자본 및 인력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 현재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신청일 또는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예비창업자)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 기관의 대표자 및 책임자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그 외 지원 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른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관 기관의 대표자 및 책임자

### ○ 제재대상

- 전라북도 지역 지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거나, 1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현재 2개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는 지원불가)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5천만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서 지원 불가.
- **15억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 개발기간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2021. 2. 25.)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협약이 종료되는 2021년 2월에는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서 해당 콘텐츠의 결과물을 미제출 및 콘텐츠 결과물의 완성도가 미비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사업신청

- 1개사 1개 분야만 신청가능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 공모
- 지원과제에 대해 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적발 시 환수조치

## ○ 신규고용

- 신청지원금 60백만원당 1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해야하며, 해당 인력은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100%이여야 함(우리원 또는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적발 시 해당 인력 인건비 환수조치

$$\text{신규고용창출인력} = \frac{\text{지원금액(천만원 단위 반올림)}}{60\text{백만원}}$$

예)  $\alpha$ : 신청지원금액 [ (150백만원 >  $\alpha$  = 1명이상) / (150백만원 ≤  $\alpha$  = 2명이상) ]

※ 신규인력은 협약체결 이후 채용 후 협약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과제 선정 후 이행 여부 수시 점검을 통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 인력충원 미 이행 시 미충원 예산 반납(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는 예산변경 불가)

## ○ 이행보증보험 제출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시 지원금이 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시 수수료(보증료 혹은 보험료)와 별도로 신용등급에 따라 현금 담보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이 우리원이 정한 기간 내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자기부담금 매칭

분야	자기부담금	공통
사업화 지원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매칭(현물 불인정)

예) 지원금액 100,000천원 = 자기부담금 10,000천원 이상

- **총사업비 운용은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관리**
- **총사업비에서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 예산편성 시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집행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개발진척도, 평가순위, 신청액의 티당성을 고려하여 예산심의평기를 통해 확정

### ※ 사업비 관련 용어설명

- **총 사업비** : 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사업자부담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 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 ○ 기타사항

- 주관기관은 신청일 이후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
- 협약 이후 1차 지원금 지급 전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 진행 예정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향후 참여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의 수익(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를 기술료로 징수함
-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 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은 전년도의 매출 자료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및 확정된 기술료를 당해 연도 전담기관<sup>1)</sup>이 정한 때에 제출·납부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 ■

- 신청준비: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 회원가입

-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컴퓨터 환경
  - PC운영체제 원도우 7 이상
  -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10 (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신청기간

- 공고/접수기간 : **2020. 09. 29.(화) ~ 2020. 10. 13.(화) 15:00까지** ※제출/한정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e나라도움 공모신청(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불가**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선택
-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명 기재시 명칭 앞뒤에 각각 '2020','[지원분야]' 명시 필수**  
예) 2020 군산 역사콘텐츠를 활용한 3D 시뮬레이션 [사업화지원]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1) 전담기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 등록 서류 ■

- 하기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여야 함
  - 압축파일명: 주관기관명.zip
  - 세부파일명: 과제신청 접수 서류는 아래의 구분번호 순으로 구분하여 첨부파일 등록
  - 50M 이상일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함(용량 확인)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기 업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사업 수행	<b>과제신청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li> <li>○ 수행기관 소개서</li> <li>○ 사업비 산출내역서</li> <li>○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li> <li>○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li> <li>○ 참여인력 이력 사항</li> <li>○ 신규인력 채용계획</li> </ul>	스캔파일 (pdf)	<p style="text-align: center;"><b>심사 시 총 9부 제출 (원본 1부,사본 8부)</b></p> <p style="text-align: center;"><u>※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편집 요망</u> <u>※ 좌절 접착 제본 제출</u></p>
	<b>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b>	스캔파일 (pdf)	-
	<b>중복지원 여부 확인서</b>	스캔파일 (pdf)	-
동의서	<b>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b>	스캔파일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li> </ul>
증빙 자료	<b>사업자등록증</b>	스캔파일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개월 이내의 것</li> </ul>
	<b>사업장가입자명부</b>	스캔파일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li> <li>○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이 나타난 것</li> <li>○ 최근 3개월 이내의 것</li> </ul> <p style="text-align: right;"><b>※ 자사의 경우, 근무자 거주 증빙 추가 제출(필수)</b></p>
	<b>3개년 표준재무제표</b>	스캔파일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19년도 표준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도 표준재무제표 없을 시, 19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단, 법적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_전문 회계사 섭외를 통한 회계검토 진행 시 확인 예정)</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b>※ 개인사업자의 경우 「17~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17~19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b></p>
	<b>법인등기부등본</b>	스캔파일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li> </ul>
	<b>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b>	스캔파일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은 것</li> </ul>
발표 자료	<b>발표평가 PPT</b>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 자유(전자파일 제출, 별도요청 예정)</li> <li>○ 선정평가 평가항목을 고려한 PPT 작성 요망</li> </ul>

예비창업자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사업 수행	과제신청서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참여인력 이력 사항 ○ 신규인력 채용계획	스캔파일 (pdf)	<p style="text-align: center;"><b>심사 시 총 9부 제출 (원본 1부,사본 8부)</b></p> <p style="text-align: center;"><u>※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편집 요망</u> <u>※좌절 접착 제본 제출</u></p>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스캔파일 (pdf)	-
	증복지원 여부 확인서	스캔파일 (pdf)	-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li> </ul>
증빙 자료	주민등록증 사본	스캔파일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개월 이내의 것</li> </ul>
	개인 신용조회서 서류	스캔파일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안내문 제공·조회대상 기관 참고</li> </ul>
	기타 각종 증빙자료	스캔파일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시 제출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li> </ul>
발표 자료	발표평가 PPT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형식 자유(전자파일 제출, 별도 요청 예정)</u></li> <li>○ 선정평가 평가항목을 고려한 PPT 작성 요망</li> </ul>

※ 누락된 서류, 파본에 대해서는 수정 파일을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상기의 제출서류 미제출은 '과제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선정 절차 ■

### ○ 선정 절차

선정평가(10월 중(예정))	예산심의평가(10월 중(예정))	협약체결(10월 중(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지원규모의 2배수 초과 시 서면 및 대면평가 진행</li> <li>○ 제출서류 평가 및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평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계획서 및 서류일체</li> <li>○ 세부 산출내역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li> <li>○ 1차 지원금 지급</li> </ul>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내용	비고
선정평가 (2배수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재무안정성, 기업 신인도, 기획우수성, 콘텐츠 경쟁력, 수행능력,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li> <li>○ 관련부처 도내/도외 외부 전문가 섭외를 통한 <b>심사위원 7인 구성</b></li> <li>○ 선정평가 70점 이상 과제 한하여 예산심의 평가 진행</li> <li>○ 선정평가 종합점수 산출평균 70점 이상 과제가 분야별 지원규모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예산심의 예비후보선정 및 예산심의평가 진행</li> <li>○ 선정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대면평가 결과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순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종합점수: 정량, 정성평가 합산 점수의 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의 합계</li> <li>※ 접수 과제가 지원규모(5개과제 내외)의 2배수 이하(10개)인 경우, 서면평가 별도 진행 없이 선정평가로 진행</li> </ul> </li> </ul>	선정평가
선정 평가 (2배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재무안정성(부채, 자본잠식 등), 기업신인도, 과제기획 및 내용, 콘텐츠 경쟁력, 수행능력, 사업화 가능성 평가</li> <li>○ 관련부처 도내/도외 외부 전문가 섭외를 통한 <b>심사위원 7인 구성</b></li> <li>○ 서면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과제 한하여 대면평가 진행</li> </ul> <p>※ 접수 과제가 지원규모(5개과제 내외)의 2배수 이하(10개) 경우,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별도 진행</p>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우수성, 콘텐츠의 기대성과, 수행능력, 사업관리 능력 평가</li> <li>○ 서면평가 위원 포함 외부전문가 심사위원 구성</li> <li>○ 대면평가 종합점수 산출평균 70점 이상의 경우 발표평가 통과</li> <li>○ 평가종합점수 산출평균 70점 이상 과제가 지원규모(5개 과제)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예산심의 예비후보선정 및 예산심의평가 진행</li> <li>○ 평가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대면평가 결과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순위 부여</li> </ul>	사업계획서 및 PPT 발표 평가
예산 심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지원과제 및 지원 금액 결정</li> <li>○ 회계·세무 전문가 섭외를 통한 심사위원 구성</li> <li>○ 신청예산 적합성 검토결과에 따른 평가 및 예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 조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종합점수 및 순위(평가종합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li> <li>2) 수행계획서 대비 예산 및 참여율의 적정성</li> </ol> </li> </ul> </li> </ul> <p>※ 예산심의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조정액은 향후 인상될 수 없음</p>	사업계획서 예산평가

※ 사업비 집행 적정성, 참여인력의 근무현황 등 파악을 위해 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한 예비순위자 선정 가능

※ 과제 신청접수의 수가 목표과제 수 보다 적거나 같을 시, 재공고 가능

## 선정 기준 ■

### ○ 선정평가 : 과제신청서를 통한 과제 수행기업의 적정성 평가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순위로 결정함
- 예산 심의 및 최종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약포기, 협약해지 등을 고려한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협약진행 시, 서면 및 대면 평가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세부 예산 조정 등)을 적용한 수행 계획서 수정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기업		서면평가(서류검토) + 대면평가(발표)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정량 평가	재무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유동비율 및 부채비율)를 통한 기업의 재무안정성 평가</li> </ul>						5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 colspan="5">평가점수</th><th>최대 배점</th></tr> <tr> <th></th><th>1.5점</th><th>1점</th><th>0.5점</th><th>0점</th><th>-0.5점</th><th></th></tr> </thead> <tbody> <tr> <td>유동 비율</td><td>300% 이상 300% 미만</td><td>150% 이상~ 150% 미만</td><td>100% 이상~ 150% 미만</td><td>50% 이상~ 100% 미만</td><td>50% 미만</td><td>1.5</td></tr> <tr> <td>부채 비율</td><td>50% 미만 100% 미만</td><td>50% 이상~ 150% 미만</td><td>100% 이상~ 150% 미만</td><td>150% 이상~ 300% 미만</td><td>300% 이상</td><td>1.5</td></tr> <tr> <td colspan="6"><b>소계=2점(기본점수)+유동비율 점수+부채비율 점수</b></td><td><b>5</b></td></tr> </tbody> </table>		구분	평가점수					최대 배점		1.5점	1점	0.5점	0점	-0.5점		유동 비율	300% 이상 300% 미만	15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50% 미만	1.5	부채 비율	50% 미만 100% 미만	5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1.5	<b>소계=2점(기본점수)+유동비율 점수+부채비율 점수</b>				
구분	평가점수					최대 배점																														
	1.5점	1점	0.5점	0점	-0.5점																															
유동 비율	300% 이상 300% 미만	15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50% 미만	1.5																														
부채 비율	50% 미만 100% 미만	5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1.5																														
<b>소계=2점(기본점수)+유동비율 점수+부채비율 점수</b>						<b>5</b>																														
<p><b>* 재무제표 미 제출 시 '0'점 처리</b></p> <p>※ 기타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을 시 추가 감점 또는 점수가 없을 수 있으며, 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p>																																				
기업 신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alpha</math>(건)=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 수/건</li> </ul>						5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 colspan="5">평가점수</th><th>최대 배점</th></tr> <tr> <th></th><th>5점</th><th>4점</th><th>3점</th><th>2점</th><th>1점</th><th></th></tr> </thead> <tbody> <tr> <td>수/건</td><td><math>0 \leq \alpha \leq 2</math></td><td><math>2 &lt; \alpha \leq 4</math></td><td><math>4 &lt; \alpha \leq 6</math></td><td><math>6 &lt; \alpha \leq 8</math></td><td><math>\alpha &gt; 8</math></td><td>5</td></tr> </tbody> </table>		구분	평가점수					최대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수/건	$0 \leq \alpha \leq 2$	$2 < \alpha \leq 4$	$4 < \alpha \leq 6$	$6 < \alpha \leq 8$	$\alpha > 8$	5													
구분	평가점수					최대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수/건	$0 \leq \alpha \leq 2$	$2 < \alpha \leq 4$	$4 < \alpha \leq 6$	$6 < \alpha \leq 8$	$\alpha > 8$	5																														
정성 평가	사업 적합성	사업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시장 및 본 사업의 사업 목적 등의 이해도</li> </ul>						5																											
		과제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목적과 개발 과제의 적합성</li> </ul>						5																											
	프로젝트 의 우수성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 여부</li> </ul>						10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콘텐츠와의 차별성 여부</li> </ul>						10																											
		공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의 공익성</li> </ul>						10																											
	사업추진 역량	사업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기업의 안정성과 개발 역량</li> </ul>						10																											
		사업추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기업의 사업 추진 의지</li> </ul>						5																											
	프로젝트 의 활용성	시장성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시장 진출 및 성공 가능성</li> </ul>						5																											
		사업계획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li> </ul>						10																											
	사업계획 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li> <li>○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li> </ul>						5																											
		사업추진 준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li> <li>○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li> </ul>						5																											
<b>합 계</b>								<b>100</b>																												

예비창업자		서면평가(서류검토) + 대면평가(발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정성 평가	사업 적합성	사업 이해도	○ 목표 시장 및 본 사업의 사업 목적 등의 이해도	5
		과제 적합성	○ 본 사업 목적과 개발 과제의 적합성	10
	프로젝트 의 우수성	독창성	○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 여부	10
		차별성	○ 기존 콘텐츠와의 차별성 여부	10
		공익성	○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의 공익성	10
	사업추진 역량	사업화 역량	○ 개발 기업의 안정성과 개발 역량	10
		사업추진의지	○ 개발 기업의 사업 추진 의지	10
	프로젝트 의 활용성	시장성 및 마케팅	○ 신규 시장 진출 및 성공 가능성	5
		사업계획의 우수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사업계획 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 ○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5 5
		사업추진 준비도	○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5 5
		합 계		100

- ※ 접수 과제가 지원규모(5개 과제 내외)의 2배수 초과(10개)일 경우, 서면평가 별도 진행
- ※ 평가항목 중 '재무안전성'은 평가시 전문 회계사 섭외를 통해 회계검토기반으로 평가 예정
- ※ 사업비 집행 적정성, 참여인력 근무, 과제 수행 가능 환경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 시 현장 점검 실시(현장점검 의견서를 선정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 PPT자료 등 발표평가 제출서류 별도 요청 예정
  - 발표평가 시, 발표자는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및 대표자로 한정함

- 예산심의평가 : 선정평가 기준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 금액 결정
- (선정평가(서면·대면) 결과 반영) 종합점수 및 순위 반영
  - (소요예산 적절성) 과제 비목별 소요예산이 지원사업과의 적절성 여부
  - (사업 관련성) 참여인력, 위탁내용, 자산취득 등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 과제 결과물 도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총 사업비 확정

구 분	내 용	비 고
인건비	○ 인건비 사항의 적절성 여부 평가	
일반수용비	○ 전문가 활용비 및 지급대상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 필수 ※ 수수료에 대한 공급가액만 지원금 책정 가능, 부가세 불인정	
임차료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재료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재료비 예산항목을 통한 유형자산 취득불가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일반용역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일반용역비 사업비 책정시, <b>부가가치세 불인정</b>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인정, 부가가치세 불인정 ○ 총 지원금의 30% 이상 책정 불가	
유형자산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자산 취득은 자부담으로만 가능	

※ 예산심의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조정액은 향후 인상될 수 없음

※ 예산 편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문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참조

#### \* 선정평가시 가산점 부여(최대배점: 5점)

※ 가산점은 선정평가 평가위원별 심사점수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심사위원 평균점수에  
(최고점, 최저점 제외) 가산

가산점 항목	평가 점수				최대 배점
○ 자부담(사업자부담금) 추가 매칭 - $\alpha(\%) = (\text{지원금}/\text{자부담}) - \text{필수 자부담비율}$	$\alpha \geq 30\%$ (1.5)	$20\% \leq \alpha < 30\%$ (1)	$10\% \leq \alpha < 20\%$ (0.5)	$\alpha < 10\%$ (0)	1.5
○ 신규고용창출 - $\beta(\text{명}) = \text{과제신규고용인력} - \text{필수 고용인력}$	$\beta \geq 3\text{명}$ (1.5)	$2\text{명} \leq \beta < 3\text{명}$ (1)	$1\text{명} \leq \beta < 2\text{명}$ (0.5)	$\beta < 1\text{명}$ (0)	1.5
○ 군산 내 사업장 보유기업 - 본사 소재지 군산 기업, 지사 불가	보유 (2)		비보유 (0)		2

## □ 문의처

- 사업문의: 첨단융복합팀 이정민 책임(063-443-2791)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유의사항

### ○ 관리규정

- 본 사업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당 사업에 적용되는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정을 준용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과 불이익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 ○ 사업비 사용 및 관리

- 지원금 및 자부담을 하나의 계정(통장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함 (단, 기존 계좌 활용 시 통장의 잔고를 ‘0’으로 만들어 놓아야 함)
- 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모든 금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하여야 하며, 협약 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함.(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집행 건은 불인정함)
- 사업비는 자기부담금을 우선집행해야함(자부담금 100% 사용 권고)
- 최종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자부담 비율 혹은 개발비 총액과 무관함.

### ○ 일반사항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의 취소, 지원금의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원은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 업체에게 있음.(단,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출로 인정되지 않음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참여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정보 확인 시 선정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음(지급된 지원비 전액 반납)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는 개별(유선·전자우편)로 공지함
- 사업 완료 시 과제 결과물(H/W와S/W 모두 포함)은 진흥원에서 고지한 일자에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 될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 기타사항

- 수행과제는 우리원 사업과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한 언론 홍보와 공식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주요사항 변경 시 해당 내용을 개신하여 재공고를 시행함)
- 해당원이 지원하는 전시회 참가 필수
- 선정평가 시 발표는 과제 총 책임자급 이상이 진행

위와 같이 공고함

2020년 09월 29일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